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65 호 2022. 10. 13.(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34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35호[도시관리계획(당사금천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36호[도시관리계획(울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37호[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및 지형도면 고시]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39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54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61호[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5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65호[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6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70호[행정대집행 계고서] 7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72호[공 시 송 달 공 고] 7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74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7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79호[「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7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81호[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8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82호[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8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83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87호[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89호[「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5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390호[「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69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복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3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2. 10. 6.
2. 점용·사용의 목적 : 동천제방도로(좌안제, 대3-44) 개설공사 현장사무실 및 창고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동 785-2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72㎡ (일시)
 - 나. 기 간 : 2022. 10. 6. ~ 2024. 9. 22. (일시)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한백산업개발(주)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나루터3길 49, 10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235호

도시관리계획(당사금천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당사금천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당사금천지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30	당사금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480번지 일원	179,340	-	179,340	'03. 12. 31. 울고218호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79,340	-	179,340	100.0	'05. 3. 24. 울고106호
제1종일반주거지역	160,480	-	160,480	89.5	
자연녹지지역	18,860	-	18,860	10.5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7	8	국지 도로	194	소2-48	소2-48	일반 도로	당사금천 지구	'05. 3. 24. 울고106호	'12. 2. 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48	8	국지 도로	182	대3-43	소3-57	일반 도로	당사금천 지구	'05. 3. 24. 울고106호	'12. 2. 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609	7~8	국지 도로	72	중2-17	당사동 250-1	일반 도로	당사금천 지구	'05. 3. 24. 울고106호	'13. 7. 25. 울(북)고124호
기정	소로	3	52	6	국지 도로	108	중2-17	당사동 750	일반 도로	당사금천 지구	'05. 3. 24. 울고106호	'12. 2. 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54	6	국지 도로	66	중2-17	당사동 250-1	일반 도로	당사금천 지구	'05. 3. 24. 울고106호	'12. 2. 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55	6	국지 도로	58	소3-57	당사동 536	일반 도로	당사금천 지구	'05. 3. 24. 울고106호	'12. 2. 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56	6	국지 도로	152	소3-55	소3-57	일반 도로	당사금천 지구	'05. 3. 24. 울고106호	'12. 2. 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57	6	국지 도로	372	중2-17	소2-48	일반 도로	당사금천 지구	'05. 3. 24. 울고106호	'12. 2. 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277	7~10	국지 도로	4,795	당사동 527-5	중1-90	일반 도로		'00. 3. 10. 울고33호	'20. 6. 4. 울(북)고94호

나) 공간시설(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0,698	감) 1,196	9,502		
변경	205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321-3번지 일원	6,798	감) 1,072	5,726	'05. 3. 24. 울고106호	
기정	206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396번지 일원	2,205	-	2,205	'05. 3. 24. 울고106호	'12. 11. 29. 울(북)고176호
기정	207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484번지 일원	845	-	845	'05. 3. 24. 울고106호	'12. 11. 29. 울(북)고176호
기정	208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509번지 일원	430	-	430	'05. 3. 24. 울고106호	
변경	209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519-1번지 일원	290	감) 124	166	'05. 3. 24. 울고106호	
기정	210	녹지	경관 녹지	북구 당사동 538번지 일원	130	-	130	'05. 3. 24. 울고106호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05	경관녹지	• 녹지축소 - A=6,798 → 5,726m ² (감 1,072m ²)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소유자의 해제 입안신청에 따른 녹지 축소
209	경관녹지	• 녹지축소 - A=290 → 166m ² (감 124m ²)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소유자의 해제 입안신청에 따른 녹지 축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개발(획지)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적용대상	개발(획지)규모(m ²)	적용예외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대 2,000m ² 이하 (단, 대상건별 개발(획지)규모 1,000m ² 를 초과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구·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1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용 도	관련법·조례에 따름
		건폐율	관련법·조례에 따름
		용적률	관련법·조례에 따름
		높 이	관련법·조례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2. 구암지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31	구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204번지 일원	58,407	-	58,407	'13. 9. 12. 울고200호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58,407	-	58,407	100.0	'05. 3. 24. 울고106호
제1종일반주거지역	49,330	-	49,330	84.5	
자연녹지지역	9,077	-	9,077	15.5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8	6	국지 도로	222	어물동 213-23	어물동 195-8	일반 도로	구암지구	'05. 3. 24. 울고106호	'12. 2. 16. 울고24호

주) ()는 구역 내 도로연장임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85	주차장	북구 어물동 1335-1번지 일원	1,380	-	1,380	'05. 3. 24. 울고106호

나) 공간시설(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8,960	감) 77	8,883	
변경	211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어물동 1331-1번지 일원	1,670	감) 77	1,593	'05. 3. 24. 울고106호
기정	212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어물동 120-2번지 일원	1,610	-	1,610	'05. 3. 24. 울고106호
기정	213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어물동 1335-2번지 일원	1,190	-	1,190	'05. 3. 24. 울고106호
기정	214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어물동 1341-2번지 일원	900	-	900	'05. 3. 24. 울고106호
기정	215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어물동 193번지 일원	220	-	220	'05. 3. 24. 울고106호
기정	216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어물동 206번지 일원	490	-	490	'05. 3. 24. 울고106호
기정	217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어물동 1350-8번지 일원	2,140	-	2,140	'05. 3. 24. 울고106호
기정	218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어물동 1343-2번지 일원	740	-	740	'05. 3. 24. 울고106호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1	경관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축소 - A=1,670 → 1,593m²(감 77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소유자의 해제 입안신청에 따른 녹지 축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개발(획지)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적용대상	개발(획지)규모(m ²)	적용예외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대 2,000m ² 이하 (단, 대상건별 개발(획지)규모 1,000m ² 를 초과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구·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용 도	관련법·조례에 따름
		건폐율	관련법·조례에 따름
		용적률	관련법·조례에 따름
		높 이	관련법·조례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3. 복성제전지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28	복성제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117번지 일원	136,910	-	136,910	'03. 12. 31. 울고218호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6,910	-	136,910	100.0	'05.3.24 울고106호
제1종일반주거지역	97,760	-	97,760	71.4	
자연녹지지역	39,150	-	39,150	28.6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84	8	국지 도로	241	중1-90	중1-90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 3. 24. 울고106호	'18. 9. 6. 울(북)고220호
기정	소로	2	385	8	국지 도로	52	중1-90	소2-384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 3. 24. 울고106호	'12. 2. 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386	8	국지 도로	102	중2-17	구유동 642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 3. 24. 울고106호	'12. 2. 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387	8	국지 도로	306	중2-17	소3-45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 3. 24. 울고106호	'12. 2. 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388	8	국지 도로	46	중2-17	소2-387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 3. 24. 울고106호	'12. 2. 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389	8	국지 도로	164	중2-17	중2-17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 3. 24. 울고106호	'12. 2. 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390	8	국지 도로	196	중2-17	중2-17	일반 도로	복성제전 지구	'05. 3. 24. 울고106호	'12. 2. 16. 울고24호
기정	소로	2	650	8	집산 도로	995 (244)	중2-17	중1-90	일반 도로		'98. 5. 11. 울고82호	'20. 7. 1. 울고193호

주) ()는 구역 내 도로연장임

(표 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5	6	국지 도로	156	중2-17	구유동 111	일반 도로	북성제전 지구	'05. 3. 24. 울고106호	'12. 2. 16. 울고24호
기정	소로	3	46	6	국지 도로	156	중2-17	소2-387	일반 도로	북성제전 지구	'05. 3. 24. 울고106호	'13. 1. 24. 울고17호
기정	소로	3	277	7~10	국지 도로	4,795	당사동 527-5	중1-90	일반 도로		'00. 3. 10. 울고33호	'20. 6. 4. 울(북)고94호

주) ()는 구역 내 도로연장임

나) 공간시설(변경)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94	공원	근린 공원	북구 구유동 27-1번지 일원	11,460	-	11,460	'05. 3. 24. 울고106호	'09. 4. 9. 울고125호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8,759	감) 46	8,713	
변경	239	녹지	경관 녹지	북구 구유동 212-9번지 일원	3,160	감) 46	3,114	'05. 3. 24. 울고106호
기정	240	녹지	경관 녹지	북구 구유동 산65번지 일원	3,665	-	3,665	'05. 3. 24. 울고106호
기정	241	녹지	경관 녹지	북구 구유동 135번지 일원	944	-	944	'05. 3. 24. 울고106호
기정	242	녹지	경관 녹지	북구 구유동 92-1번지 일원	990	-	990	'05. 3. 24. 울고106호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39	경관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축소 - A=3,160 → 3,114m²(감 46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소유자의 해제 입안신청에 따른 녹지 축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개발(획지)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적용대상	개발(획지)규모(m ²)	적용예외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대 2,000m ² 이하 (단, 대상건별 개발(획지)규모 1,000m ² 를 초과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구·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1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용 도	관련법·조례에 따름
		건폐율	관련법·조례에 따름
		용적률	관련법·조례에 따름
		높 이	관련법·조례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2. 관계도면: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당사금천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36호

도시관리계획(울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1770호(2021. 12. 23.)로 부분 준공된 울동 공공주택 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울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기정	202	울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218,536.2

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게재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가)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27	3,745	47,470.3	11	1,310	18,840.8	12	2,200	20,227.2	4	235	4,581.9	
일반도로	계	27	3,745	43,649.9	11	1,310	18,840.8	12	2,200	20,227.2	4	235	4,581.9
	대로	3	925	6,692.4	-	-	-	2	787	2,949.7	1	138	3,742.7
	중로	7	1,205	21,735.8	1	454	9,758.0	4	714	11,493.6	2	37	484.2
	소로	17	1,615	15,221.7	10	856	9,082.8	6	699	5,783.9	1	60	355.0
가각및기타	-	-	3,820.4	-	-	-	-	-	-	-	-	-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0 (33.5)	보조 간선도로	7,741 (519)	3호광장	12호광장	일반도로	4호 광장		염포로
기정	대로	2	21	30~50 (39)	주간선 도로	13,229 (268)	대2-1	대3-85	일반도로	효문 공단	'98. 5. 11.	오토 벨리로
기정	대로	3	120	25	집산도로	138	중로2-521	대로2-1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중로	1	330	20~25	집산도로	454	대로3-120	소로3-보81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중로	2	518	18~25	집산도로	139	중로1-330	대로2-21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중로	2	519	15	집산도로	182	소로1-134	중로1-330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중로	2	520	15	집산도로	266	중로2-521	중로2-519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중로	2	521	15	집산도로	127	중로2-520	대로3-120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중로	3	395	13	국지도로	17	중로1-330	소로1-135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중로	3	396	13	국지도로	20	소로1-136	대로3-120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소로	1	134	10	국지도로	170	효문동23-2	중로2-519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소로	1	135	10	국지도로	272	소로1-보10	소로1-보9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소로	1	136	10	국지도로	215	소로2-633	소로1-보14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소로	1	보9	10	특수도로	11	소로1-135	대로2-1	보행자 도로		'15. 7. 29.	
기정	소로	1	보10	10	특수도로	11	소로1-135	대로2-1	보행자 도로		'15. 7. 29.	
기정	소로	1	보11	10	특수도로	16	대로3-120	소로1-135	보행자 도로		'15. 7. 29.	
기정	소로	1	보12	10	특수도로	17	중로1-330	소로1-135	보행자 도로		'15. 7. 29.	
기정	소로	1	보13	10	특수도로	18	소로1-136	대로3-120	보행자 도로		'15. 7. 29.	
기정	소로	1	보14	10	특수도로	12	소로1-136	대로2-1	보행자 도로		'15. 7. 29.	

(표 계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43	10	국지도로	114	중로2-519	효문동 산30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소로	2	628	8	국지도로	99	소로3-268	중로2-520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소로	2	629	8	국지도로	83	소로1-135	소로2-630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소로	2	630	8	국지도로	70	소로1-135	소로1-135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소로	2	631	8	국지도로	99	소로1-136	소로2-633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소로	2	632	8	국지도로	66	소로2-633	소로2-633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소로	2	633	8	국지도로	282	소로1-136	소로1-136	일반도로		'15. 7. 29.	
기정	소로	3	보81	6	특수도로	60	중로1-330	효문동 산33-1	보행자도로		'15. 7. 29.	
변경	소로	3	보81	6	특수도로	60	중로1-330	효문동 산33-1	보행자 우선도로		'15. 7. 29.	

※ ()는 지구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보81	소로3-보81	·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열공급설비의 관리 및 비상차량 출입을 위해 차량 및 보행자의 혼용이 가능한 보행자우선도로로 변경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게재생략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게재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게재생략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게재생략

3. 가구 및 획지구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게재생략

4.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게재생략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변경부분에 한함

제3장 도로시설(변경)

제57조(보행자우선도로) - 신설

- ①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에 보행안전시설 및 차량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할 것
- ②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에 노상주차는 허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 폭, 차량통행량, 보행자의 통행량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보행자의 통행 부분의 바닥은 블록이나 석재 등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일반도로의 보도와 교차할 경우 교차지점에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닥을 설치할 것
- ④ 빗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갖출 것
- ⑤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충족하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 ⑥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보행자우선도로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IV.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울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37호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20호(2021. 1. 2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174호(2022. 8. 4.)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된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옥동~농소 간 도로 및 오토밸리로 조성 등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접 매곡, 경주지역 산업단지 개발에 비해 정주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자족적 정주기반을 강화하기 위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면적 (당초) 363,051m² (변경) 363,310m²
4. 사업시행자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한영
5. 시행기간 : 2022. 4. 7. ~ 2025. 12. 31.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별첨]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052-241-7912)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 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생략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울산광역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44,600,986.7		1,144,600,986.7		
주거 지역	소 계	67,763,823.1	증)305,066	68,068,059.10		
	제1종전용주거지역	506,457.9		506,457.9		
	제1종일반주거지역	12,724,452.7		12,724,452.7		
	제2종일반주거지역	36,787,913.9	증)161,295	36,949,208.9		
	제3종일반주거지역	11,628,027.4	증)106,281	11,734,308.4		
	준주거지역	6,116,971.2	증)37,490	6,154,461.2		
상업 지역	소 계	7,626,562.6		7,626,562.6		
	중심상업지역	372,425.0		372,425.0		
	일반상업지역	6,824,761.7		6,824,761.7		
	근린상업지역	164,375.9		164,375.9		
	유통상업지역	265,000.0		265,000.0		
공업 지역	소 계	82,086,360.5		82,086,360.5		
	일반공업지역	76,430,315.4		76,430,315.4		
	준공업지역	5,656,045.1		5,656,045.1		
녹지 지역	소 계	513,944,866.0	감)305,066	513,639,800.0		
	보전녹지지역	17,298,520.0		17,298,520.0		
	생산녹지지역	16,352,730.0		16,352,730.0		
	자연녹지지역	480,293,616.0	감)305,066	479,988,550.0		
관리 지역	소 계	62,276,464.9		62,276,464.9		
	보전관리지역	40,544,000.9		40,544,000.9		
	생산관리지역	12,832,003.0		12,832,003.0		
	계획관리지역	8,900,461.0		8,900,461.0		
농 립 지 역		283,130,267.1		283,130,267.1		
자연환경보전지역		43,644,421.0		43,644,421.0		
미 지 정 지 역		84,128,221.5		84,128,221.5		

주) 기정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138호(2021.6.10.) GW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임

■ 천곡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63,051	증) 259	363,310	100.0	
주 거 지 역	305,236	감) 170	305,066	84.0	
제2종일반주거지역	161,201	증) 94	161,295	44.4	
제3종일반주거지역	105,820	증) 461	106,281	29.3	
준주거지역	38,215	감) 725	37,490	10.3	
자연녹지지역	57,815	증) 429	58,244	15.9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사유
		기 정	변 경			
-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61,295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반영한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한 변경
			제3종일반 주거지역	106,281	250	
			준주거지역	37,490	400~500	
			자연 녹지지역	58,244	100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계	기정	24	7,402 (1,150)	114,149 (32,644)	3	1,674 (80)	36,962 (1,594)	13	3,749 (1,070)	59,468 (31,050)	8	1,979	17,719
	변경	23	7,184 (1,150)	116,260 (33,583)	3	1,673 (80)	38,863 (1,723)	13	3,746 (1,070)	60,221 (31,860)	7	1,765	17,176
대로	기정	1	1,070 (1,070)	31,050 (31,050)	-	-	-	1	1,070 (1,070)	31,050 (31,050)	-	-	-
	변경	1	1,070 (1,070)	31,860 (31,860)	-	-	-	1	1,070 (1,070)	31,860 (31,860)	-	-	-
중로	기정	9	3,457 (80)	62,319 (1,594)	3	1,674 (80)	36,962 (1,594)	2	643	11,663	4	1,140	13,694
	변경	9	3,451 (80)	64,477 (1,723)	3	1,673 (80)	38,863 (1,723)	2	640	11,621	4	1,138	13,993
소로	기정	14	2,875	20,780	-	-	-	10	2,036	16,755	4	839	4,025
	변경	13	2,663	19,923	-	-	-	10	2,036	16,740	3	627	3,183

주) 0는 구역 외 연장 및 면적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76	29~30	보조 간선 도로	1,070 (1,070)	79호광장	중1-120	일반 도로			
변경	대로	2	76	29~31	보조 간선 도로	1,070 (1,070)	79호광장	중1-120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383	22~25	집산 도로	669	대2-76	중1-385	일반 도로			
변경	중로	1	383	22~25	집산 도로	668	대2-76	중1-38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384	22	집산 도로	357	중1-385	중1-383	일반 도로			
변경	중로	1	384	22~23	집산 도로	357	중1-385	중1-38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385	20~23	집산 도로	648 (80)	대2-76	소1-105	일반 도로			
변경	중로	1	385	20~24	집산 도로	648 (80)	대2-76	소1-105	일반 도로			

주 1) ()는 구역 외 연장 및 면적

주 2) 대로2-76호선 구역외도로 반영 (대로2-76호선 폭원30m 미개설구간 개설)

주 3) 중로1-385호선 구역외도로 반영 (도시개발구역 ~ 관문길 도로구간 개설)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74	18	집산 도로	428	중1-383	중1-385	일반 도로			
변경	중로	2	574	18	집산 도로	425	중1-383	중1-38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575	18	집산 도로	215	중1-383	중2-57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70	12	집산 도로	781	중1-383	중1-383	일반 도로			
변경	중로	3	470	12~ 15	집산 도로	781	중1-383	중1-38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71	12	집산 도로	283	중3-470	소2-66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72	12	집산 도로	46	대2-76	중2-574	일반 도로			
변경	중로	3	472	12	집산 도로	45	대2-76	중2-57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73	12	특수 도로	30	대2-76	소2-661	보행자 도로			
변경	중로	3	473	12	특수 도로	29	대2-76	소2-661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2	659	8	국지 도로	230	중3-470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0	8	국지 도로	263	중1-383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1	8	국지 도로	297	중1-383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2	8	국지 도로	249	중3-470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3	8	국지 도로	240	중3-470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4	8	국지 도로	230	중3-470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5	8	국지 도로	100	중1-384	소2-66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6	8	국지 도로	105	중1-384	소2-668	일반 도로			

주) ()는 구역 외 연장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67	8	국지 도로	182	중1-384	중1-38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8	8	국지 도로	140	중1-384	소2-66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84	4	특수 도로	211	소2-659	소3-285	보행자 도로			
폐지	소로	3	284	4	특수 도로	211	소2-659	소3-285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285	4	특수 도로	546	중1-384	중1-384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286	4	특수 도로	32	중1-384	103호 우수지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287	6	특수 도로	50	대2-76	중2-574	보행자 도로			
변경	소로	3	287	6	특수 도로	49	대2-76	중2-574	보행자 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2-76	• 일부구간 노폭 확대 - B=29~30m → 29~31m	• 기개설도로 현황에 맞추어 도로 폭원변경
-	중로1-383	• 도로 폭원 확대 - B=22~25m → 22~25m	• 보도확장 및 가로수 식재 공간 확보 위하여 도로 폭원 변경
-	중로1-384	• 도로 폭원 확대 - B=22m → 22~23m	• 가로수 식재 공간 확보 및 공원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 폭원 변경
-	중로1-385	• 도로 폭원 확대 - B=20~23m → 20~24m	• 보도 최소 유효 폭 2m이상 확보 및 가로수 식재로 인하여 도로변경
-	중로2-574	• 도로 노선 축소 - L=428m → 425m	• 중로 1-385호선 도로 폭원 확대로 인하여 노선 축소
-	중로3-470	• 도로 폭원 확대 - B=12m → 12~15m	• 174호 근린공원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 변경
-	중로3-472	• 도로 노선 축소 - L=46m → 45m	• 대로 2-76호선 노폭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변경
-	중로3-473	• 도로 노선 축소 - L=30m → 29m	• 대로 2-76호선 노폭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변경
-	소로3-284	• 도로 폐지	• 원형보존지 산립 훼손 최소화 및 재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도로 폐지
-	소로3-287	• 도로 노선 축소 - L=50m → 49m	• 대로 2-76호선 노폭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변경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342	주차장	북구 천곡동 919번지 일원	1,276	-	1,276		
변경	343	주차장	북구 천곡동 935-1번지 일원	1,428	감) 33	1,395		
-	344	주차장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1,305	-	1,305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43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면적감소 A=1,428㎡→1,3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 2-76호선 변경으로 인하여 주차장 면적 일부 변경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25	녹지	완충 녹지	북구 천곡동 914-1번지 일원	19,077	감) 706	18,371		
변경	626	녹지	경관 녹지	북구 천곡동 산147-5번지 일원	19,749	증) 1,144	20,893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625	완충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 면적 감소 A=19,077㎡ → 18,3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 2-76호선 노폭 변경으로 인하여 녹지 면적 변경
626	경관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면적 증가 A=19,749㎡ → 20,8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계획 및 소로 3-284호선 폐지에 따라 녹지 녹지계획 일부 변경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74	근린공원	근린공원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11,141	감) 181	10,960		
-	150	소공원	소공원	북구 천곡동 920번지 일원	1,500	-	1,500		
-	151	소공원	소공원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1,395	-	1,395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74	근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면적 감소 A=11,141m² → 10,96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용 가능한 공원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설계변경 등을 감안하여 공원계획 일부 변경

3. 방재시설

가.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03	유수지	저수시설	북구 천곡동 900-3번지 일원	1,646	-	1,646		
변경	104	유수지	저수시설	북구 천곡동 536-2번지 일원	2,202	감) 43	2,159		

■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04	유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수지 면적 감소 A=2,202m² → 2,159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로 2-76호선 노폭 변경으로 인하여 유수지 면적 일부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77	천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북구 천곡동 927-1번지 일원	363,051	증) 259	363,310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63,051	증) 259	363,310	100.0	
주 거 지 역	305,236	감) 170	305,066	84.0	
제2종일반주거지역	161,201	증) 94	161,295	44.4	
제3종일반주거지역	105,820	증) 461	106,281	29.3	
준주거지역	38,215	감) 725	37,490	10.3	
자연녹지지역	57,815	증) 429	58,244	15.9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북구 천곡동 927-1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61,295	200	•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반영한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위한 변경
			제3종일반 주거지역	106,281	250	
			준주거지역	37,490	400~500	
			자연 녹지지역	58,244	1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계	기정	24	7,402 (1,150)	114,149 (32,644)	3	1,674 (80)	36,962 (1,594)	13	3,749 (1,070)	59,468 (31,050)	8	1,979	17,719
	변경	23	7,184 (1,150)	116,260 (33,583)	3	1,673 (80)	38,863 (1,723)	13	3,746 (1,070)	60,221 (31,860)	7	1,765	17,176
대로	기정	1	1,070 (1,070)	31,050 (31,050)	-	-	-	1	1,070 (1,070)	31,050 (31,050)	-	-	-
	변경	1	1,070 (1,070)	31,860 (31,860)	-	-	-	1	1,070 (1,070)	31,860 (31,860)	-	-	-
중로	기정	9	3,457 (80)	62,319 (1,594)	3	1,674 (80)	36,962 (1,594)	2	643	11,663	4	1,140	13,694
	변경	9	3,451 (80)	64,477 (1,723)	3	1,673 (80)	38,863 (1,723)	2	640	11,621	4	1,138	13,993
소로	기정	14	2,875	20,780	-	-	-	10	2,036	16,755	4	839	4,025
	변경	13	2,663	19,923	-	-	-	10	2,036	16,740	3	627	3,183

주) ()는 구역 외 연장 및 면적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76	29~30	보조 간선 도로	1,070 (1,070)	79호광장	중1-120	일반 도로			
변경	대로	2	76	29~31	보조 간선 도로	1,070 (1,070)	79호광장	중1-120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383	22~25	집산 도로	669	대2-76	중1-385	일반 도로			
변경	중로	1	383	22~25	집산 도로	668	대2-76	중1-38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384	22	집산 도로	357	중1-385	중1-383	일반 도로			
변경	중로	1	384	22~23	집산 도로	357	중1-385	중1-38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385	20~23	집산 도로	648 (80)	대2-76	소1-105	일반 도로			
변경	중로	1	385	20~24	집산 도로	648 (80)	대2-76	소1-10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574	18	집산 도로	428	중1-383	중1-385	일반 도로			
변경	중로	2	574	18	집산 도로	425	중1-383	중1-385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575	18	집산 도로	215	중1-383	중2-574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70	12	집산 도로	781	중1-383	중1-383	일반 도로			
변경	중로	3	470	12~15	집산 도로	781	중1-383	중1-38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71	12	집산 도로	283	중3-470	소2-66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72	12	집산 도로	46	대2-76	중2-574	일반 도로			
변경	중로	3	472	12	집산 도로	45	대2-76	중2-574	일반 도로			

주 1) ()는 구역 외 연장 및 면적
 주 2) 대로2-76호선 구역외도로 반영 (대로2-76호선 폭원30m 미개설구간 개설)
 주 3) 중로1-385호선 구역외도로 반영 (도시개발구역 ~ 관문길 도로구간 개설)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473	12	특수 도로	30	대2-76	소2-661	보행자 도로			
변경	중로	3	473	12	특수 도로	29	대2-76	소2-661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2	659	8	국지 도로	230	중3-470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0	8	국지 도로	263	중1-383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1	8	국지 도로	297	중1-383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2	8	국지 도로	249	중3-470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3	8	국지 도로	240	중3-470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4	8	국지 도로	230	중3-470	중3-470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5	8	국지 도로	100	중1-384	소2-66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6	8	국지 도로	105	중1-384	소2-66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7	8	국지 도로	182	중1-384	중1-38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68	8	국지 도로	140	중1-384	소2-66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84	4	특수 도로	211	소2-659	소3-285	보행자 도로			
폐지	소로	3	284	4	특수 도로	211	소2-659	소3-285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285	4	특수 도로	546	중1-384	중1-384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286	4	특수 도로	32	중1-384	103호 유수지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287	6	특수 도로	50	대2-76	중2-574	보행자 도로			
변경	소로	3	287	6	특수 도로	49	대2-76	중2-574	보행자 도로			

주) ()는 구역 외 연장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2-76	• 일부구간 노폭 확대 - B=29~30m → 29~31m	• 기개설도로 현황에 맞추어 도로 폭원변경
-	중로1-383	• 도로 폭원 확대 - B=22~25m → 22~25m	• 보도확장 및 가로수 식재 공간 확보 위하여 도로 폭원 변경
-	중로1-384	• 도로 폭원 확대 - B=22m → 22~23m	• 가로수 식재 공간 확보 및 공원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 폭원 변경
-	중로1-385	• 도로 폭원 확대 - B=20~23m → 20~24m	• 보도 최소 유효 폭 2m이상 확보 및 가로수 식재로 인하여 도로변경
-	중로2-574	• 도로 노선 축소 - L=428m → 425m	• 중로 1-385호선 도로 폭원 확대로 인하여 노선 축소
-	중로3-470	• 도로 폭원 확대 - B=12m → 12~15m	• 174호 근린공원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 변경
-	중로3-472	• 도로 노선 축소 - L=46m → 45m	• 대로 2-76호선 노폭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변경
-	중로3-473	• 도로 노선 축소 - L=30m → 29m	• 대로 2-76호선 노폭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변경
-	소로3-284	• 도로 폐지	• 원형보존지 산림 훼손 최소화 및 재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도로 폐지
-	소로3-287	• 도로 노선 축소 - L=50m → 49m	• 대로 2-76호선 노폭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변경

(나)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42	주차장	북구 천곡동 919번지 일원	1,276	증)1,276	1,276		
변경	343	주차장	북구 천곡동 935-1번지 일원	1,428	증)1,428	1,395		
기정	344	주차장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1,305	증)1,305	1,305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43	주차장	• 주차장 면적감소 A=1,428㎡→1,395㎡	• 대로 2-76호선 변경으로 인하여 주차장 면적 일부 변경

2) 공간시설

(가)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25	녹지	완 충 녹 지	북구 천곡동 914-1번지 일원	19,077	감) 706	18,371		
변경	626	녹지	경 관 녹 지	북구 천곡동 산147-5번지 일원	19,749	증) 1, 14 4	20,893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625	완 충 녹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 면적 감소 A=19,077m² → 18,371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 2-76호선 노폭 변경으로 인하여 녹지 면적 변경
626	경 관 녹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면적 증가 A=19,749m² → 20,893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계획 및 소로 3-284호선 폐지에 따라 녹지 녹지계획 일부 변경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74	근 린 공 원	근 린 공 원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11,141	감) 181	10,960		
-	150	소공원	소공원	북구 천곡동 920번지 일원	1,500	-	1,500		
-	151	소공원	소공원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1,395	-	1,395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74	근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면적 감소 A=11,141m² → 10,96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 가능한 공원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설계변경 등을 감안하여 공원계획 일부 변경

3) 방재시설

(가) 우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03	우수지	저 류 시설	북구 천곡동 900-3번지 일원	1,646	-	1,646		
변경	104	우수지	저 류 시설	북구 천곡동 536-2번지 일원	2,202	감) 43	2,159		

■ 우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04	우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지 면적 감소 A=2,202m² → 2,159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 2-76호선 노폭 변경으로 인하여 우수지 면적 일부 변경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합	계	86,393	감)318	86,075	-	-	86,393 86,075	
기정 변경	5B	5B	3,698	감)13	3,685	-	북구 천곡동 902번지 일원	3,698 3,68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변경	6B	6B	3,800	감)4	3,796	-	북구 천곡동 904-8번지 일원	3,800 3,796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변경	7B	7B	4,719	감)4	4,715	-	북구 천곡동 906-3번지 일원	4,719 4,71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변경	8B	8B	6,281	감)8	6,273	-	북구 천곡동 637-1번지 일원	6,281 6,273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11B	11B	5,595			-	북구 천곡동 910-1번지 일원	5,59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12B	12B	4,841			-	북구 천곡동 913-1번지 일원	4,841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13B	13B	5,035			-	북구 천곡동 912-2번지 일원	5,03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14B	14B	5,035			-	북구 천곡동 916번지 일원	5,03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15B	15B	5,265			-	북구 천곡동 916-10번지 일원	5,26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변경	16B	16B	5,265	감)13	5,250	-	북구 천곡동 927-1번지 일원	5,265 5,250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17B	17B	5,707			-	북구 천곡동 914-1번지 일원	5,707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18B	18B	5,335			-	북구 천곡동 914-11번지 일원	5,33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19B	19B	2,143			3	북구 천곡동 914-8번지 일원	2,143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20B	20B	4,894			-	북구 천곡동 922-1번지 일원	4,894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변경	21B	21B	4,855	감)87	4,842	-	북구 천곡동 928-1번지 일원	4,855 4,842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24B	24B	5,753			-	북구 천곡동 952-12번지 일원	5,753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25B	25B	3,207			-	북구 천곡동 947-2번지 일원	3,207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변경	26B	26B	3,021	감)174	2,847	1	북구 천곡동 952-1번지 일원	3,021 2,847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변경	27B	27B	1,944	감)87	1,857	1	북구 천곡동 946번지 일원	1,944 1,857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합	계	88,72	감)38	88,34	-	-	88,725	
			5	3	2			88,342	
기정	1B	1B	25,487			-	북구 천곡동 산147-8번지 일원	25,487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기정 변경	23B	23B	63,23	감)38	62,85	-	북구 천곡동 544-1번지 일원	63,238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8	3	5			62,855	

■ 준주거용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합	계	22,41	감)37	22,03	-	-	22,418	
			8	9	9			22,039	
기정 변경	9B	9B	6,049	감)23	6,026	1	북구 천곡동 906-2번지 일원	3,320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3,315	
						4	북구 천곡동 632번지 일원	2,729	
								2,711	
기정 변경	28B	28B	5,816	감)10	5,711	-	북구 천곡동 942번지 일원	5,816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5,711	
기정 변경	29B	29B	6,575	감)14	6,429	2	북구 천곡동 540번지 일원	6,575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6,429	
기정 변경	30B	30B	3,978	감)10	3,873	1	북구 천곡동 537-1번지 일원	1,709	환지계획 수립 이후 획 지계획 확정
								1,669	
						3	북구 천곡동 536-10번지 일원	2,269	
								2,204	

■ 주차장(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합	계	4,009	감)33	3,976	-	-	4,009 3,976	
기정	9B	9B	1,305			2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1,305	
기정 변경	19B	19B	1,276	감)33	1,243	2	북구 천곡동 919번지 일원	1,276 1,243	
기정	29B	29B	1,428			1	북구 천곡동 935-1번지 일원	1,428	

■ 공원·녹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합	계	52,862	증)257	53,119	-	-	52,862 53,119	
기정 변경	2B	2B	19,749	증)472	20,221	-	북구 천곡동 산147-5번지 일원	19,749 20,221	
기정 변경	3B	3B	11,141	감)181	10,960	-	북구 천곡동 산144-1번지 일원	11,141 10,960	
기정	9B	9B	1,395			3	북구 천곡동 633번지 일원	1,395	
기정 변경	10B	10B	16,735	감)51	16,684	-	북구 천곡동 914-1번지 일원	16,735 16,684	
기정	19B	19B	1,500			1	북구 천곡동 920번지 일원	1,500	
기정 변경	26B	26B	1,390	증)5	1,395	2	북구 천곡동 951-2번지 일원	1,390 1,395	
기정 변경	27B	27B	952	증)12	964	2	북구 천곡동 948-6번지 일원	952 964	

■ 유수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합	계	3,848	감43	3,805	-	-	3,848 3,805	
			4B	4B	1,646			-	북구 천곡동 900-2번지 일원
기정 변경	30B	30B	2,202	감)43	2,159	2	북구 천곡동 536-2번지 일원	2,202 2,159	

■ 기타용지(종교시설)(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m ²)	
합	계		23,291	감)14	23,277	-	-	23,291 23,277	
			22B	22B	23,291	감)14	23,277	-	북구 천곡동 927-7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5B,6B,7B,8B,11B,12B,13B,14B,15B,16B,17B,18B,19B-3,20B,21B,24B,25B,26B-1,27B-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충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 ※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물의 1층에 한하여 허용하되, 건축물 연면적 비율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종로이상 도로 1m지정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자의 개성에 맞게 다양하게 배치하되 건축물의 형태에 변화감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배치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성과 일조조건에 유리하도록 남향이나 양호한 경관이 조망되는 곳을 향하여 주택 전면부를 배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은 산지 및 구릉지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며, 지붕의 경사범위는 3/10 이상으로 권장 담장 및 대문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한 경우 생울타리 등의 식재로 계획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권장한다.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에 의함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공동주택용지(A)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1B	용도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종로이상 도로 5m지정, 소로이상 도로 2m지정	
		높 이	• 25층 이하	
		배 치	• 통경·통풍측 확보 가능한 건축계획 수립 • 서측 산지변 공동주택 배치는 스카이라인 변화를 유도	
		형 태	•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범위는 3/10 이상으로 권장 • 옥탑 구조물과 지붕이 분리된 경사지붕은 지양하고, 입면디자인과 일체화된 경사지붕 디자인 권장 단, 평지붕으로 설치 할 경우 옥상 구조물을 계획하여 옥탑의 돌출을 최소화 유도 • 지붕의 형태는 옥탑부분과 조화될 수 있게 적용하고, 인접단지와의 높이, 형태, 재질 등이 통일된 이미지 형성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에 의함			
기 타	•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공동주택용지(B)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23B	용도	허용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종로이상 도로 5m지정	
		높 이	• 30층 이하	
		배 치	• 통경·통풍측 확보 가능한 건축계획 수립 • 서측 산지변 공동주택 배치는 스카이라인 변화를 유도	
		형 태	•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범위는 3/10 이상으로 권장 • 옥탑 구조물과 지붕이 분리된 경사지붕은 지양하고, 입면디자인과 일체화된 경사지붕 디자인 권장 단, 평지붕으로 설치 할 경우 옥상 구조물을 계획하여 옥탑의 돌출을 최소화 유도 • 지붕의 형태는 옥탑부분과 조화될 수 있게 적용하고, 인접단지와의 높이, 형태, 재질 등이 통일된 이미지 형성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에 의함			
기 타	•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3) 준주거용지(A)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9B-1,9B-4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28호의 장례식장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종로이상 도로 2m지정
			높 이	• 7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가로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벽면에는 설비시설의 노출을 금지하며, 옥외계단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 • 주변의 건물 지붕과 일체화 또는 연속적인 리듬감을 부여 • 옥상설비는 벽면을 세우거나 지붕창 등에 의해 차폐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에 의함
			기 타	•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3) 준주거용지(B)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2 8 B , 29B-2, 3 0 B - 1 , 30B-3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28호의 장례식장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종로이상 도로 2m지정
			높 이	• 10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가로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벽면에는 설비시설의 노출을 금지하며, 옥외계단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 • 주변의 건물 지붕과 일체화 또는 연속적인 리듬감을 부여 • 옥상설비는 벽면을 세우거나 지붕창 등에 의해 차폐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6조에 의함
			기 타	•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4) 주차장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9B-2, 19B-2, 29B-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 2조에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운동시설(옥외 철타미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에 한함)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 되어야 함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및 조례에 의한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및 조례에 의한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종로이상 도로변 1~2m지정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종일반주거지역 : 4층 이하, 준주거지역 : 7~10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단, 해당지구 내 건축공사 시 업무 등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5) 종교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22B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6」 상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대시설은 종교시설의 부속용도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외의 시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 이하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종로이상 도로 1m지정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기타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 고
기정	1	22B 북서측 및 북동측 및 남서측 및 남동측, 23B 북서측 및 북동측 및 남서측 및 남동측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대로2-76호선, 중로 1-383호선, 중로 2-574호선, 중로 2-575호선,

2) 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 고
기정	1	5B 서측, 6B 서측, 7B 서측, 8B 동측, 11B 남측, 12B 북측 및 서측, 13B 북측, 14B 동측 및 북측, 15B 북측 및 서측, 16B 북측 및 동측, 17B 서측 및 남측, 18B 남측, 19B-2 동측, 19B-3 동측 및 남측, 20B 서측 및 남측, 21B 남측 및 동측, 24B 북측 및 동측, 25B 북측 및 동측 및 서측, 26B-1 동측, 27B-1 동측 및 서측, 22B 동측 및 서측 및 남측 및 북측	건축한계선 1m 지정	중로 1-383호선 변, 중로 1-384호선 변, 중로 1-385호선 변, 중로 2-574호선 변, 중로 2-575호선 변, 중로 3-470호선 변, 중로 3-471호선 변, 중로 3-473호선 변
기정	1	1B 서측 및 남측 및 북측, 9B-1 서측 및 남측, 9B-2 남측, 9B-4 동측 및 남측, 28B 북측 및 서측 및 남측, 29B-1 북측 및 남측, 29B-2 동측 및 남측 및 북측, 30B-1 서측 및 남측 및 북측, 30B-3 동측 및 남측 및 북측	건축한계선 2m 지정	대로 2-76호선 변 중로 1-383호선 변, 중로 1-384호선 변, 중로 1-385호선 변, 중로 2-574호선 변, 중로 3-472호선 변, 소로 3-285호선 변
기정	1	1B 동측, 23B 동측 및 서측 및 남측 및 북측	건축한계선 5m 지정	중로 1-383호선 변, 중로 1-384호선 변, 중로 1-385호선 변, 중로 2-574호선 변, 중로 2-575호선 변

※ 그 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하는 거리는 울산시 건축조례에 따른다.

II.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지정된 「천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시행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침화 하는데 있으며, 또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시행지침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지정된 「천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 ① 건축부문의 지침은 4개의 편으로 구성되며 제1편 총칙과 제4편 지구단위계획 운용 부문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편 민간부문, 제3편 공공부문으로 각각 해당 대지에 각각 적용한다.
- ② 지침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다.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다.

제4조(시행지침의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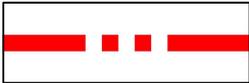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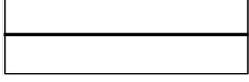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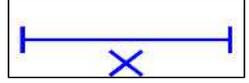
- ①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및 관련조례상의 규정을 따른다.
-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③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조례·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조례·지침에 따른다.
- ④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⑤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환지설계 등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허용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 특정한 용도를 허용한 것을 말한다.
 3. “지정용도”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에서 특정한 용도만을 정한 것을 말한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6. “건축한계선”라 함은 건축물(부대시설 포함) 지상부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지정된 선을 말한다.
 7. “건폐율”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8.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9.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0.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11. “강조색”이라 함은 건물의 외벽에서 유리면적을 제외한 벽면의 10%미만을 차지하는 색으로 건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한가지 이상의 색을 말한다.
 12.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 진출입을 불허하는 구간을 말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다.
 13. “전면도로”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제6조(도면표시방법)

본 지침과 관련하여 규제되는 사항에 대한 도면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도면기호	색번호	비 고												
구역계			Color 10 (255,0,0)	-												
지적선			Color 250 (51,51,51)	-												
가구계획선			Color 10 (255,0,0)	굵은실선												
획지계획선			Color 7 (0,0,0)	굵은실선												
가구 및 획지번호	가구번호	1B	Color 10 (255,0,0)	가구 중심에 기재												
	획지번호	1	Color 5 (0,0,255)	획지 왼쪽 상단에 기재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건축물의 용도</th> </tr> <tr> <td>건축물 최대 용적률</td> <td>건축물 최고 높이/층수</td> </tr> <tr> <td>건축물 최대 건폐율</td> <td>건축물 최저 높이/층수</td> </tr> </table>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최대 용적률	건축물 최고 높이/층수	건축물 최대 건폐율	건축물 최저 높이/층수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colspan="2">A</td> </tr> <tr> <td>200</td> <td>-m/5</td> </tr> <tr> <td>60</td> <td>-</td> </tr> </table>	A		200	-m/5	60	-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최대 용적률	건축물 최고 높이/층수															
건축물 최대 건폐율	건축물 최저 높이/층수															
A																
200	-m/5															
60	-															
건축한계선	1.0m이격		Color 210	170번을 기준으로 하되, 건축한계선 거리에 따라 색상별로 표시												
	2.0m이격		Color 170													
	5.0m이격		Color 88													
차량출입불허구간			Color 170 (0,0,255)	-												

제2편 민간부문

제1장 획지(대지)에 관한 사항

제7조(획지(대지)의 분할 및 합병)

-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단위로 함
- ② 획지(대지)의 분할·합병은 입지여건 및 택지규모에 따라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 할 수 있다. 다만, 합병의 경우 연접한 2필지로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2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제8조(허용용도)

- ① 단독주택용지의 허용용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종교집회장,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
 - ※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건축물의 1층에 한하여 허용하되, 건축물 연면적 비율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② 공동주택용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허용용도로 한다.
- ③ 준주거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의 준주거지역 내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을 허용용도로 한다.
- ④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해당하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허용한다.

제9조(불허용도)

- ① 각 용지별로 허용용도외의 시설의 입지는 제한한다.
- ② 준주거용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28호의 장례식장은 입지를 불허한다.

제3장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제10조(건폐율)

- ① 건축물의 건폐율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으며,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른다.
- ②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 단독주택용지 : 60% 이하
 - 공동주택용지 : 50% 이하
 - 준주거용지 : 60~70% 이하
 -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조례에 의함
- ③ 도면표시방법 : 건폐율은 아래 표시 그림의 좌측 하단에 명기한다.

(예시) 건폐율 60% 이하

60%	

제11조(용적률)

- ① 건축물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으며,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법규에 따른다.
- ②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 단독주택용지 : 200% 이하
 - 공동주택용지 : 250% 이하
 - 준주거용지 : 400~500% 이하
 -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조례에 의함
- ③ 도면표시방법 : 용적률은 아래 표시 그림의 좌측 상단에 명기한다.

(예시) 용적률 200% 이하

200%	

제12조(건축물의 높이)

- ① 건축물의 최저 및 최고층수가 제한되어 있는 대지는 지정된 층수(지상층 말함)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 :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공동주택용지 : 25~30층 이하
 - 준주거용지 : 7~10층 이하
 - 주차장 : 제2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준주거지역 7~10층 이하
- ② 각 건축물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교차로 및 간선도로변, 단지내부의 건물높이를 조화롭게 건축하여야 한다.
- ③ 도면표시방법 : 건축물의 높이 규제는 층수로 규제하며, 상한선의 경우 이를 아래 표시의 우측상부에, 하한선의 경우 이를 아래 표시의 우측 하부에 각각 명기한다.

	4층
	-

(예시) 4층 이하 최저제한 없음

제4장 건축물 배치에 관한 사항

제13조(건축물의 배치)

- ① 단독주택용지는 거주자의 개성에 맞게 다양하게 배치하되 건물의 형태에 변화감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배치하도록 하며,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성과 일조조건에 유리하도록 남향이나 양호한 경관이 조망되는 곳을 향하여 주택 전면부를 배치하도록 한다.
- ② 공동주택용지는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를 고려하여 통경·통풍축이 확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공동주택 건축물 사이의 공간에 밀폐감을 주지 않고 프라이버시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혼합 배치하되, 주변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 변화를 유도한다.
- ④ 준주거용지는 가로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 ⑤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및 관련조례상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건축한계선)

- ① 종로이상 도로와 접하는 단독주택용지 도로변으로 1.0미터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② 종로이상 도로와 접하는 준주거용지변으로 2.0미터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③ 종로이상 도로와 접하는 공동주택용지변으로 5.0미터 건축한계선을 두어 오픈스페이

스를 확보하도록 한다.

- ④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에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녹지공간의 조성 및 블라드, 벤치, 조형물, 자전거도로 등의 가로경관 조성에 필요한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한다.

제5장 건축물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①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붕형태는 산지 및 구릉지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며, 지붕의 경사범위는 3/10 이상을 권장한다.
 2. 외벽이 10cm이상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입면에 굴곡 또는 돌출형태의 디자인으로 조성한다.
 3. 조망차폐 및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건축외부 마감 및 색채에 통일감을 형성토록 한다.
- ② 공동주택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형태, 재질, 색채 등의 이미지가 유사성을 갖도록 하며, 통일감 있는 건축물 경관을 형성토록 한다.
 2. 1~4층의 저층부는 목재, 점토벽돌, 황토벽돌 등 자연재질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3.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범위는 3/10이상으로 권장한다.
 4. 옥탑구조물과 지붕이 분리된 경사지붕은 지양하고, 입면디자인과 일체화된 경사지붕 디자인을 권장한다. 단,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구조물을 계획하여 옥탑의 돌출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한다.
 5. 지붕의 형태는 옥탑부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접단지와의 높이, 형태, 재질 등이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 ③ 준주거용지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설의 성격과 가로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한다.
 2. 주변의 건물 지붕과 일체화 또는 연속적인 리듬감을 부여하고, 옥상설비는 벽면을 세우거나 지붕창 등에 의해 차폐 될 수 있도록 한다.
 3. 벽면에는 설비시설의 노출을 금지하며, 옥외계단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제16조(건축물의 색채)

- ① 주거지역내 건축물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주조색은 화려하지 않은 색을 권장한다.
- ② 건축물의 외벽 색깔은 다음 기준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 등 색채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단독주택 건축물의 색채계획

I Color Palette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A	B	C
2.5Y 8/2	N8	7.5BP 5/2
		D
		9Y 5/2
		E
		2.5Y 4/4

I Color Palette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A	B	C
5YR 9/1	5Y 8/2	5Y 6/2
		D
		5Y 7.5/2
		E
		2.5Y 6/2

■ 준주거 건축물의 색채계획

I Color Palette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A	B	C
N8	5Y 8/2	2.5Y 3/2
		D
		2.5BG 3/2
		E
		7.5BG 4/2

I Color Palette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A	B	C
6.5Y 8.5/1	10GY 8/2	10Y 6/2
		D
		N7
		E
		2.5G 4/2

■ 공동주택 건축물의 색채계획-1지구

Type A

I Color Palette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기단부 색채	기단부 색채
A	B	C	D	E
5YR 9/1	6.5Y 8.5/1	5Y 8/2	N7	10YR 6/4
			F	N5
			자형색채	자형색채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 공동주택 건축물의 색채계획-2지구

Type A

I Color Palette

Main Color	Sub Color	Accent Color	기단부 색채	기단부 색채
A	B	C	D	E
5YR 9/1	6.5Y 8.5/1	5Y 8/2	N7	10YR 6/4
			F	N5
			자형색채	자형색채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제17조(담장 및 대문)

- ① 단독주택용지의 담장 및 대문 설치는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울타리 등의 식재로 계획하고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담장 및 대문의 재료, 색채 등은 본 건축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

- 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및 설치기준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기준에 따른다.

제6장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19조(대지내 공지)

- ① 건축선 등에 의하여 생겨난 공지는 녹지 및 화단으로 조성하도록 권장하되, 건축물 신축 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주차출입구, 건물 진·출입구간이 설치되는 부분과 사면 발생 및 옹벽 설치 등의 지형적 이유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및 관련조례를 따른다.

제20조(대지내 조경)

- ① 대지내 조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1. 도로변 : 지하고가 높은 낙엽활엽 교목과 병충해 및 공해에 강한 교목을 식재한다.
 2. 공원·녹지 : 관상적 가치가 높은 화목류(수형·꽃·열매)와 경관성이 뛰어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목으로 한다.
 3. 택지주변 : 지하고 및 녹음효과가 높은 낙엽활엽교목과 수관이 크고, 답압에 잘 견디는 수목을 식재한다.
- ②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1.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변에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생울타리를 만들고, 배롱나무와 같은 녹음식재를 실시한다.
 3. 동반자 및 보호자를 위한 휴게공간 및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분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포장할 수 있도록 한다.
 4. 놀이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편

리하도록 설계한다.

- ③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및 관련조례를 따른다.

제7장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사항

제21조(옥외광고물)

- ① 옥외광고물은 광고물의 고유 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 ② 판류형 옥외광고물 설치를 지양하고, 입체형 옥외광고물 설치를 권장한다.
- ③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 및 조례를 따른다.

제3편 공공부문

제1장 도로시설물

제22조(자전거도로)

- 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포장은 투수성 포장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시·종점부 유색(적색) 포장을 하도록 하며, 100m 간격 노면 표시 및 200m 간격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교차로의 경우 자전거 횡단로 설치(적색포장) 및 자전거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 ④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 및 관련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제2장 교통시설물

제23조(버스정차대)

- ① 주보행동선과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도모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자 도로 연결부나 주요 공공시설 등 기타 교통시설과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교통량을 감안하여 가급적 중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되 이용 인구 집중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정차대는 교차로, 횡단보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버스정차대에는 각종 안내시설 및 가로시설물을 집합적으로 설치하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과속방지시설)

- ① 교차로 부근, 특정건축물의 부지 출입구, 급경사구간의 정상부분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 ②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건축물의 환경유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도로에 과속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주변도로, 기타 통행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한다.
- ③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밝은색으로 채색하도록 한다.

제25조(횡단보도)

- ① 횡단보도의 설치 위치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교차지점에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 교차로에서의 횡단보도는 각각부의 끝단에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하고 험프형 횡단보도로 설치한다.
- ② 횡단보도의 구조
 - 횡단보도의 폭은 도로의 위계에 따라 구분하여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는 6m내지 10m, 국지도로는 4m내지 6m로 한다.
- ③ 보도의 경계석 턱을 낮추고,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제26조(교통신호등 설치기준)

- ① 설치기준은 교통영향평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3장 포 장

제27조(조성기준)

- ① 포장 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 ②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제28조(차도포장)

- ① 차도부분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차혼용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서행운

전을 유도하고 보행특성에 따라 포장 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한다.

- ③ 보행 및 자전거도로와의 교차로접속구간 등 시인성 제고가 필요한 구간은 투수성콘크리트, 소형고압블록 등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보도포장)

- ① 주요시설지 내 포장은 투수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투수콘포장 또는 자연재료를 이용한 포장으로 계획하여 상징적인 공간감을 부여한다.
- ② 횡단보도 주변에는 턱없는 경계석과 점자블록 설치한다.

제4장 도시안내 표지시설

제30조(안내체계 설치원칙)

- ① 광역, 주요시설, 주유가로 순으로 체계적인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도로표지는 도로표지 규칙에 의해 설치하되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등 및 신호등과 통합설치 함으로서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일반기준)

- ① 표지판에 표기할 지명은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쉽게 인지되어야 한다,
- ② 명명체계의 우선순위는 직역, 시설, 가로, 단지 순으로 하고, 위계별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하나의 표지판에 표기해야 할 명칭이 중복될 경우 상위 위계순으로 표기하되 필요시 2개의 명칭까지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주행도중 연속된 안내가 되도록 지명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다음 표와 같이 명명한다.

구 분	표시내용	명명원칙
주요 지역	지역명칭, 대표장소, 지역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변, 주요 전면공지에 배치 • 거리 및 도시이름 표기
주요 시설	시설명, 주요지역명, 방향, 교통시설 환승법, 대표적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명도가 높은 시설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교차로 위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기 • 공공 및 생활시설편의시설을 위한 안내뿐만 아니라 시각적 지표물을 활용·시설물의 2~3개 전방 교차로로부터 표기
주요 가로	행선지명, 가로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향의 가로명을 표기하고 좌우측에 인접 단지명을 표기 • 방향 및 예고표지에는 진행방향과 교차방향의 노선번호표기하고 남북(홀수), 동서(짝수)가로에 일련번호를 부여
주요 단지	주차장위치, 단지방향, 지구내 가로망방향, 단지명(동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의 이용권, 개발밀도에 따라 단지명 부여 • 동을 기본단위로 번호체계를 구성하되 단지별로 구분 • 단지번호는 주출입구에서 시계방향으로 부여

제32조(교통안전 표지판)

- ① 구조, 형상 : 도로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② 설치기준

1. 배치간격은 표지판의 인지도가 좋고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동작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2. 규제, 지시표지는 구제와 지시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하고 주의 표지는 위험지역 입구나 혹은 위험지점 이전에, 안내표지는 교차로 및 전방에 배치한다.
3. 교차로 부분과 교통량 집중지역에는 타 지역보다 배치간격을 줄이도록 한다.

③ 배치의 원칙

1.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장애를 주는 도로의 부속시설은 그 위치와 규모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2. 안전표지를 설치 시 도로변이나 접속도로로부터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도로 부토 충분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한다.

제33조(도로표지판)

① 구조, 형상 : 도로시설물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② 설치기준

1. 운전자가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2. 설치방향은 차량이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하되 도로의 형태에 따라 10도이내의 안쪽에 설치하며, 시각적 장애를 일으키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③ 표기방법

1. 지역의 진행방향과 전방에서 교차할 도로의 노선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2. 방향표지판은 원거리와 근거리의 2개 지명을 표기하고, 기존 교통안전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부착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제34조(유도방향 안내판)

① 구조, 형상 : 운전자의 시선높이를 감안하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설치기준 : 주요 교차로 및 주요 건축물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방향을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절점 부근에 집중 배치한다.

③ 표시내용

- 주요 목표지점명
- 주요목표지점까지 거리
- 가로명

제5장 공원·녹지**제35조(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36조(공원·녹지계획)

- ① 공원·녹지공간을 체계화하여 환경악영향 발생요인을 제거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야간 이용의 활용도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야간조명을 계획하도록 한다.
- ③ 안내 시설물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 ④ 포장재는 투수성 재료 및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⑤ 패턴은 과도한 패턴과 색채 사용을 지양하며, 지역성, 상징성을 부여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주변 녹지 및 기존 경관요소와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사용을 권장한다.

제6장 가로식재 및 가로장치물

제37조(기준 및 식재방식)

가로수 식재 기본원칙

-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 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하고, 방향성을 갖도록 열식을 원칙으로 한다.
- 가로수 식재 후 수목보호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철재 지주대 또는 지주목을 설치한다.
- 구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가로구간의 기능과 성격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도록 한다.

제38조(가로 장치물)

- ① 가로 장치물의 설치는 일관된 주제에 따라 가로장치물 배치유형을 도출하고 재료, 형태, 배치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 ② 도로성격에 따라 가로장치물 배치유형을 도출하고 재료, 형태, 배치장소, 등 통합 및 복합화 된 계획기준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도록 한다.
- ③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 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보행집분산 지점에 가로 장치물을 집중 배치하여 이용의 편의와 기능간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④ 본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관련법규 및 관련조례를 따른다.

제7장 기타사항

제39조(출입구에 관한 사항)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경우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도록 한다.

제4편 지구단위계획 운용부문

제40조(지침의 적용)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구역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 행위에 적용한다. 단, 기존 건축물은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행위에 적용하도록 한다.

제41조(건축허가 및 심의)

- 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내용이 건축허가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중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심의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 해당부분 위치 표기
 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해당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임야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반영여부 검토 서류
- ③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한한다.

제42조(지침의 조정)

다음 각호 1에 해당하여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현상설계를 통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경우
- 규제사항을 완화하여도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설계상의 좋은 착상이 있는 경우로서 사전심의를 득할 경우

제43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①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도시개발사업 준공전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며, 준공이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 ② 본 지침 시행 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23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구유길 30	구유동 168-1	2022. 10. 13.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10. 1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361호

울산광역시 복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복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개정(안 제9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소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소통과
- 전화번호 : 052-241-7264, 팩스번호 : 052-241-72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행정지원국장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개정(안 제9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10월 중
- 바. 입법예고 : 2022. 10. 13. ~ 11. 2.(20일간)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기금의 존속기한)</p> <p>이 기금의 운용기한은 <u>2022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운용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p>	<p>제9조(기금의 존속기한)</p> <p>----- <u>2027년 12월 31일</u>-----</p> <p>-----</p> <p>-----</p> <p>-----.</p>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365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10. 07.(금) ~ 2022. 10. 14.(금)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p>가. 사업명 : 매곡동 927-6번지의 3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p> <p>나. 사업주체 : 강희찬외 3명</p> <p>다. 시 공 자 : (주)루안종합건설</p> <p>라. 설 계 자 : (주)부광건축사사무소</p> <p>마. 감 리 자 : 태인씨디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p> <p>바.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울산시 북구 매곡동 927-6 ○ 대지면적 : 1642.7m² ○ 연 면 적 : 1245.18m²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세 대 수 : ○ 공사기간 : 2022.10-2022.03 ○ 허 가 일 : 2022.07.19 ○ 착공신고수리일 : ○ 공 사 비 : 1,826,000,000 <p>사. 안전점검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금액 :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 평균금액

3. 안전점검 내용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정기점검(거푸집동바리)	2	1,500,000원	3,000,000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정기점검(흙막이지보공)	2	1,500,000원	3,000,000원	
계	8		6,000,000원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2. 10. 07.(금) 17: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2. 10. 14.(금) 11: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2. 10. 14.(금) 12: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

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2. 10. 14.(금) 11:00까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2. 10. 17.(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28호\(2021. 3. 8.\)](#)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 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평점 = $6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바랍니다.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북구 매곡동 927-6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 종	2022 년									2023 년						비고			
	10 월			11 월			12 월			1 월			2 월				3 월		
	15	20	31	10	20	30	10	20	31	10	20	30	10	20	31		10	15	
가시선공사	흙막이설치및제거																		
철근콘크리트공사	B1-옥상층 콘크리트타설																		
석 공 사										벽체 환강석 붙이기									
방 수 공 사										B1-3층 역제방수									
미 장 공 사										천정, 벽체통발바름									
타 일 공 사										1-3층 타일붙이기									
장호, 유리공사										AW, PD, FSD후방설치			유리끼우기						
수 정 공 사										천정 석고보드외									
도 장 공 사										천정 무늬코트공법									
설 비 공 사				B1-옥상층 목재, 바닥배관															
전기, 통신공사				B1-옥상층 목재, 바닥배관										관널, 동기구설치					
소 방 공 사				B1-옥상층 목재, 바닥배관								소화관, 관널설치							
기 타 공 사										E/V 조립설치			조경수식재						
부 대 공 사														보도블럭깔기		준공정소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370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2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287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경작물을 2022년 10월 7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지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2년 10월 22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48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하천법」 제73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면적	대집행 방법
상안동 321번지	경작	47㎡	불법경작 원상회복

2022년 10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372호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태화강)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10. 12. ~ 2022. 10. 26.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동	437-25번지	미상	미상	불법점용	60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2. 10. 26. (수)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37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북구 어물동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3호선)사업

나. 명 칭: 어물동 북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일원

3. 사업규모 :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L=1,887m, B=6.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공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 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2-241-7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379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중산매곡지구 도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중산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산동 63필지(6,474㎡)를 매곡동으로 편입(안 별표 1, 별표 2)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소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소통과
- 전화번호 : 052-241-7264, 팩스번호 : 052-241-72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행정지원국장

1. 개정이유

- 중산매곡지구 도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중산동과 매곡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산동 63필지(6,474m²)를 매곡동으로 편입(안 별표 1, 별표 2)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 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2. 10월 예정
- 바. 입법예고 : 2022. 10. 13. ~ 11. 2.(20일간)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표 1의 농소1동 및 농소2동의 관할구역란 중 “963-1~963-71” 를 각각
“963-1~963-71, 967~1029” 로 한다.

별표 2의 8란 다음에 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p>중산동 57-1, 58-1, 60, 61-5, 61-10~11, 62-1, 63-4~5, 63-13~16, 63-20, 77-1, 78-2~4, 81-3~5, 82-5~6, 82-8~11, 83-3, 83-7~8, 83-10~11, 83-13, 86-6, 86-9~12, 86-14, 87-3~4, 87-6~7, 88-7, 88-16~17, 88-19, 94-6~7, 94-9, 95, 95-1, 96-31, 1185-16~17, 1185-19~20, 1185-22~24, 1186-20~21, 1186-23번지(6,474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p>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	변경내역	연번	변경내역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9	<p>중산동 57-1, 58-1, 60, 61-5, 61-10 ~11, 62-1, 63-4~5, 63-13~16, 63-20, 77-1, 78-2~4, 81-3~5, 82-5 ~6, 82-8~11, 83-3, 83-7~8, 83-10 ~11, 83-13, 86-6, 86-9~12, 86-14, 87-3~4, 87-6~7, 88-7, 88-16~17, 88-19, 94-6~7, 94-9, 95, 95-1, 96-31, 1185-16~17, 1185-19~20, 1185-22~24, 1186-20~21, 1186-23 번지(6,474제곱미터)를 매곡동으로 편입한다.</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울산광역시 복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과 행정8급 최자윤(241-7264)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381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복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 18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자우편 : oyw0606@korea.kr
- 팩스 : 052-241-7899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www.bukgu.ulsan.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382호

울산광역시 복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 제4조)
- 다. 위원장의 직무(안 제7조)
- 라.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 18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총괄과
- 전자우편 : oyw0606@korea.kr
- 팩스 : 052-241-7899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총괄과(전화 052-241-7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p>「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10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서명)</p> <p style="margin-top: 20px;">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검토 항목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복구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소집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8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결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결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은 제8조에 따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견서

건 명	
1. 종합의견 ○ ○	
2. 공통사항 검토 ○ ○	
3. 입지유형별 검토 - 도시·농촌·하천지역 등으로 구분 작성 ○ ○	
4. 심의대상 유형별 검토 ○ ○	
5. 기타 검토의견 ○ ○	
심의결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

0000. 00. 00.

위와 같이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 의견을 제출함

위원 성명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의결서

제 20 - 00호

심의개요

- 일시/장소 :
- 출석위원 명단 :

심의안건

- 사업명 :
- 사업개요 :

의결사항

-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 심의결과 :

※ 세부심의 내용은 별지를 활용하여 기재

출석위원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0 . .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383호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
-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 법령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
- 다. 주민투표 대상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 마.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내용 신설(안 제8조제2항)
-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3조 ~ 제16조)
- 사. 부칙 개정 및 관련 서식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6조, 제2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소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소통과
- 전화번호 : 052-241-7263, 팩스번호 : 052-241-72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행정지원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등의 내용으로 개정(2022. 4. 26.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
-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 법령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
- 다. 주민투표 대상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 마.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내용 신설(안 제8조제2항)
-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3조 ~ 제16조)
- 사. 부칙 개정 및 관련 서식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6조, 제2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2. 10월 중
- 바. 입법예고 : 2022. 10. 13. ~ 11. 2.(20일간)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법”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를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로 하고,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를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구인서명부”를 “주민투표청구서”로,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을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 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장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중전의 제17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0조(중전의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8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1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교 부 신 청 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 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p>「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위 사람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 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수 입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입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울산광역시 북구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행정동별로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일자	서명또는날인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하고,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의 책무) 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u>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u>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조(구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주민투표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 <u>외국인</u>-----</p> <p>-----</p> <p>-----</p> <p>-----</p> <p>-----</p> <p>-----</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u>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u>사람</u>은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u> -----</p> <p>-----</p> <p>-----</p> <p>-----</p> <p>-----</p> <p>----- <u>외국인은</u> -----</p> <p>-----</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u>주민투표법</u>」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u></p> <p>2. <u>행정동의 구역변경, 폐치·분합과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u></p> <p>3. <u>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u></p>	<p>< 삭 제 ></p>

현 행	개 정 안
<p><u>관한 사항</u></p> <p>4. <u>법령상 기금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사업 등 주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u></p> <p>5. <u>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u></p> <p>6. <u>법 제7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주민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u></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u>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u></p>	<p>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u>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u> ----- ----- ----- <u>.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성명</u> 2. <u>생년월일</u> 3. <u>주소 또는 체류지</u>

현 행	개 정 안
<p>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u>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u></p> <p>제11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행정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u>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제10조에 따라 확인된 명부를 포함한다)</u>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3조(심의회 구성 등) ① <u>구청장은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u></p>	<p>4. 서명 연월일</p> <p>② -----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 ----- ----- -----.</p> <p>제11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 -----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u>법 제12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u></p>

현 행	개 정 안
<p><u>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u> 2. <u>이의신청의 심사·결정</u> 3. <u>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u> 4. <u>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u> <p>② <u>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u></p> <p>④ <u>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구 소속 실·국장 이상 공무원</u> 2. <u>구 의회 의원</u> 3. <u>울산광역시 북구 선거관리 위원회의 공무원</u> 	<p><u>하 “심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u></p> <p>② <u>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③ <u>심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관계 공무원</u> 2. <u>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u> 3. <u>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4. <u>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현 행	개 정 안
<p>4.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5.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p> <p>⑥ 의장은 심의회 회의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4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p> <p>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담</p>	<p>제14조(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p> <p>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p>

현 행	개 정 안
<p><u>당 부서장이, 서기는 주민투표 업무담당이 된다.</u></p> <p><u>④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에는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u></p> <p><u>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u></p> <p><u>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u></p> <p><u>⑦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u></p>	<p><u>에 의장이 소집한다.</u></p> <p><u>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 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u></p>
<p><u>< 신 설 ></u></p> <p><u>< 신 설 ></u></p>	<p><u>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u></p> <p><u>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u></p> <p><u>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u></p>

현 행	개 정 안
<p><u>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제2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게재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u></p>	<p><u>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위 사람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 명 요 청 권 위 입 신 고 서					서 명 요 청 권 위 입 신 고 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청구인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수입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수입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입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수입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입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입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현 행

청 구 인 서 명 부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서명일자	서명또는날인	비 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개 정 안

청 구 인 서 명 부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일자	서명또는날인	비 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기재하고,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신 청 사 유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투표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 작성요령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 작성요령
-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서식]

< 삭제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안표지)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의 안 명)

제 출 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제출 연 월 일	. .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록

< 삭 제 >

일 시				장 소	
참석사항	재적의원	참석	불참	(참석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제1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 삭 제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결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의결내용

위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직위	성명	서명	의 건 (있을 경우 기재)
의 장			
부의장			
위 원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

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5. 29.>

1.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4.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 ⑦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과 행정7급 조수진(241-726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38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및 예외 경우를 명확히 하고,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명확화 및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변경(안 제4조)

- 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설치의무 명확화
-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기준 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별표 1을 따름으로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변동계수를 1.1로 규정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5조)

- '영 제4조제5항' → '영 제4조제6항'

3.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 (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 전화번호 : 052-241-7821, 팩스번호 : 052-241-78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10. .

발 의 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및 예외 경우를 명확히 하고,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명확화 및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변경(안 제4조)
- 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설치의무 명확화
 -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기준 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별표 1을 따름으로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변동계수를 1.1로 규정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5조)
- '영 제4조제5항' → '영 제4조제6항'

3.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2. 10월중
- 바. 입법예고 : 2022. 10월중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람을”을 “자를”로 한다.

제3조 중 “사람을”을 “자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조 및 영 제4조”를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으로 하고, “퇴비화 · 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 퇴비화 · 사료화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영 제4조제5항 및 영 별표 1을 따르되, 영 별표 1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4)에 구청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1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5항”을 “영 제4조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설(이하 “퇴비화·사료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가. 소각시설: 해당 택지등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값(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

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영 제4조제5항 및 영 별표 1을 따르되,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4)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1로 한다.

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나. 퇴비화·사료화시설: 해당 택지등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값(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 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가. 소각시설: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값(다만, “소각시설 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란 폐기물 1톤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톤당 1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나. 퇴비화·사료화시설: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퇴비화·사료화시설 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값(이 경우 1톤당 8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매입

- 에 소요되는 비용: 택지조성 원가에 제2호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가. 소각시설: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주민 편익시설 등 부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 나. 퇴비화·사료화시설: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주민 편익시설 등 부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5. 폐기물발생량 산정은 해당 택지등에 거주하거나(세입자 포함), 상주하는 사람(상가,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 모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6. 구청장은 그 밖에 상기에 규

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폐기물
처리시설 비용 산정에 필요하
다고 인정될 경우 영 제4조제3
항의 규정을 준용하거나 필요
한 조항을 삽입하여 비용을 산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설치비용에 해당하
는 금액 산정기준은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
근에 실제 설치한 금액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시설의 형식과 방
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의
납부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모
든 사항을 포함하여 그 개발사
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
출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
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삭 제>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
----- 영 제4조제6항-----

1. ~ 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

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 ⑩ (생략)

[별표 1]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text{설치납부금액} = \text{시설 부지 매입비} + \text{시설 설치비}$$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시설 부지 매입비} = \text{시설 부지 면적} \times \text{부지 매입단가}$$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text{시설 부지 면적(㎡)} = [1) + 2)] \times 100 \div \text{건폐율(\%)}$$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시설용량	소요면적
50톤/일 미만	73.2㎡ × 시설용량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	3,660㎡ + 20㎡ × (시설용량 - 50)
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	4,660㎡ + 25㎡ × (시설용량 - 100)
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	9,660㎡ + 5㎡ × (시설용량 - 300)
500톤/일 이상	11,000㎡ + 5㎡ × (시설용량 - 500)

2) 주민편익시설 면적

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

나. 부지 매입단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당 조성원가. 다만,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시설 설치비} = \text{소각시설 설치비} + \text{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text{주민 편익시설 설치비}$$

가. 소각시설 설치비

$$\text{소각시설 설치비} = 1) \div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
-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 구역의 인구
-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 6)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text{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1) \div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 1)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
-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 구역의 인구
-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 6)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389호

「울산광역시 복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울산 복구 캐릭터 에코버전에 대한 상징물 사용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다양한 상품발굴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여 캐릭터 활용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캐릭터 상징물의 종류 추가 (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별표 5)
- 사용료 부과 및 감면근거 신설(안 제8조)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6, 제43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미디어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미디어정보담당관

- 전화번호 : 052-241-7161, 팩스번호 : 052-241-712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기획조정실장

1. 개정이유

- 울산 복구 캐릭터 에코버전에 대한 상징물 사용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다양한 상품발굴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여 캐릭터 활용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캐릭터 상징물의 종류 추가 (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별표 5)
- 나. 사용료 부과 및 감면근거 신설(안 제8조)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6, 제43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2. 10월중
- 바. 입법예고 : 2022. 10월중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4. 캐릭터: 별표 4, 별표 5

제8조제1항 중 “상징물의 사용자는”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상품 주문(제작)량 총금액의 1퍼센트로 하고,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 전액 면제
2.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고, 별지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캐 릿 터 (에코버전)



1. 색 상

가. 기본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CMYK C72 M12 Y10 K0
RGB : R88 G182 B54



CMYK C0 M100 Y100 K0
RGB : R200 G0 B18



CMYK C100 M77 Y100 K0
RGB : R0 G41 B56



CMYK C88 M75 Y100 K29
RGB : R88 G63 B35



CMYK C3 M0 Y72 K0
RGB : R247 G204 B66

나. 캐릭터는 용도에 따라 단색으로 하여 제작·사용 할 수 있다.

2. 표현내용

- 가. 에코버전 캐릭터 쇠부리는 천혜의 자연을 가진 울산 북구의 자연환경 및 다양한 형태의 도시정원을 상징하며, 식물 이파리 모양의 머리 형태는 친환경 생태도시,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울산 북구의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표현
- 나. 에코버전 캐릭터가 들고 있는 소품은 북구 12경 중 하나인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의 편백나무 묘목, 의상은 에코백을 재활용한 의상이므로써, 녹색 도시 북구의 친환경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

3. 작도법

- 가. 캐릭터 작도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 방법으로 사용한다.
-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할 경우 본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캐릭터: <u>별표 4</u></p> <p>5. 구목(느티나무)·구화(참나리)·구조(산까치): <u>별표 5</u></p>	<p>제3조(상징물의 종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캐릭터: <u>별표 4, 별표 5</u></p> <p>5 ----- ----- <u>별표 6</u></p>
<p>제8조(사용료) ① <u>상징물의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② <u>상징물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u></p>	<p>제8조(사용료) ① <u>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u></p> <p>② <u>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상품 주문(제작)량 총금액의 1 퍼센트로 하고,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u></p> <p>③ <u>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1. <u>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전액 면제</u></p> <p>2. <u>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액 면제</u></p> <p>3. <u>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경</u></p>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신 설>

[별표 5]

캐 릿 터 (에코버전)



1. 색 상

- 가. 기본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캐릭터는 용도에 따라 단색으로 하여 제작·사용 할 수 있다.



CMYK C72 M12 Y0 K0
RGB R09 G82 B54



CMYK C0 M00 Y100 K0
RGB R200 G0 B0



CMYK C100 M77 Y00 K0
RGB R0 G44 B50



CMYK C38 M75 Y100 K29
RGB R88 G63 B36



CMYK C0 M0 Y100 K0
RGB R255 G255 B0

2. 표현내용

- 가. 에코버전 캐릭터 쇠부리는 천혜의 자연을 가진 울산 북구의 자연환경 및 다양한 형태의 도시정원을 상징하며, 식물 이파리 모양의 머리 형태는 친환경 생태도시,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울산

북구의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표현
 나. 에코버전 캐릭터가 들고
 있는 소품은 북구 12경 중
 하나인 천마산 편백산림욕
 장의 편백나무 묘목, 의상
 은 에코백을 재활용한 의
 상으로써, 녹색 도시 북구
 의 친환경 이미지를 상징
 적으로 표현

3. 작도법

- 가. 캐릭터 작도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방법으로 사용한다.
- 나. 이 방법이 불가피할 경우
 본항에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별표 5]

[별표 6] (현행 [별표 5]와 같음)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익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다.

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8. 10. 16., 2021. 12. 28.>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5(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8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복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미디어정보담당관 행정6급 오윤미(241-716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390호

「울산광역시 복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기존 블로그 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활성화를 위해 SNS 서포터즈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게시글 공유 및 영상 출연, 제작 등에 대해서도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SNS 게재사항 추가 (안 제3조)
- SNS 서포터즈 인원 삭제, 활동사항 명시 (안 제6조)
- 예산의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내용 명확화 (안 제7조)
 - 1) 지원범위 확대
 - (당초) 서포터즈
 - (변경) 서포터즈 등 콘텐츠 생산 참여·공유활동을 한 사람
 - 2) 지원내용 명확화 :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
- '표창'을 '포상'으로 변경, 포상대상 확대 (안 제8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1.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미디어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미디어정보담당관

- 전화번호 : 052-241-7161, 팩스번호 : 052-241-712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기획조정실장

1. 개정이유

- 기존 블로그 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활성화를 위해 SNS 서포터즈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게시글 공유 및 영상 출연, 제작 등에 대해서도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SNS 게재사항 추가 (안 제3조)
- 나. SNS 서포터즈 인원 삭제, 활동사항 명시 (안 제6조)
- 다. 예산의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내용 명확화 (안 제7조)
 - 1) 지원범위 확대
 - (당초) 서포터즈
 - (변경) 서포터즈 등 콘텐츠 생산 참여·공유활동을 한 사람
 - 2) 지원내용 명확화 :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
- 라. '표창'을 '포상'으로 변경, 포상대상 확대 (안 제8조)
- 마.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규정 신설 (안 제10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 구비 확보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2. 10월중
- 바. 입법예고 : 2022. 10월중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의 미담, 수범사례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 중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를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SNS 활성화를 위한 각종 취재 및 원고 제출
 2.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포터즈 등 SNS 콘텐츠 생산에 참여하거나 공유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활동비, 원고료, 출연료 등 경비
2.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

제8조의 제목 “(표창)”을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포터즈”를 “사람”으로, “표창”을 “포상”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설)</p> <p>① (생 략)</p> <p>②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4. <u>그 밖에 주민의 미담·수범 사례 등</u></p> <p><u><신 설></u></p>	<p>제3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주민의 미담, 수범사례</u></p> <p>5. <u>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6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의 운영) ① (생 략)</p> <p>② 서포터즈의 <u>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③ 서포터즈는 <u>구청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 ⑥ (생 략)</p>	<p>제6조(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서포터즈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임기----- -----.</p> <p>③ 서포터즈는 <u>소셜미디어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u></p> <p>1. <u>SNS 활성화를 위한 각종 취재 및 원고 제출</u></p> <p>2. <u>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7조(서포터즈의 지원) ① <u>구청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원고료 지급기준표에 의해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7조(예산의 지원) <u>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p>1. <u>서포터즈 등 SNS 콘텐츠 생산</u></p>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제8조(표창) 구청장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서포터즈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신 설>

[별표]

원고료 지급 기준표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단위	지 급 액	비 고
원고료	건	30,000원	

에 참여하거나 공유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활동비, 원고료, 출연료 등 경비

2.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포상) -----

--- 사람-----
----- 포상-----
-----.

제10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복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미디어정보담당관 행정6급 오윤미(241-7161)